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 처리요령(Ⅲ)

교통사고란 장소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충돌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피해물이 생긴 것을 말하며, 지난 호에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처리 요령에 대해 소 테마 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사고신고

교통사고는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되어있다.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경위를 확인 받느라고 시간적 정신적 손해를 이차적으로 입을 수도 있으며 벌점을 받는 등의 행정처분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신고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사자가 엉갈린 주장을 하게 되거나 나중에 엉뚱한 트집으로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진실을 확보해 두는 차원에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신고요령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신고하면 된다.

교통사고를 경찰신고하는 것을 예를 들면, 『1999년 11월 22일 오후 2시경 서울에서 인천쪽으로 가던 중 오류동 오류극장 앞 4거리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서울○○바○○○○호 1톤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하면서 본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을 충격하였다.』는 요령으로 신고한다.

교통사고의 신고의무(1)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고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물피해의 경우 가·피해자 쌍방간에 원활한 합의를 하였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완벽히 해 놓았으며 가·피해자간에 사고 내용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는 팬창다고 하면서 그냥 갔다가 며칠후 보상을 요구하며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해자가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완벽하게 해 주었으며 사고 직후 쌍방간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시키는 등 조치를 완벽하게 했었다면 사고 발생후 며칠이 경과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빵소니사고로 처리되지 않으며 기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범칙금만 내는 등 행정처분만 받으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차후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①사고현장에서 간략하게나마 완전히 합의한 경우 또는 ②피해자가 없거나 부상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③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한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법취지와 헌법상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판결 91도 101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피해자 구호)를 한 뒤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사고발생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파손된 물건 및 파손정도 등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운행중인 차량만이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부상자가 없으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있다.

가.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사고장소에서 사고책임소재에 대해 다투느라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 교통의 혼잡을 초래한 경우와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의무를 따지지 않고 대형사고이든 접촉사고이든 간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사고규모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사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인정되므로 사고장소가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학교운동장, 부대연병장 등 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사고신고의무는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후 서로 보상을 합의하고 각자의 차량을 몰고 간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만 부상하였거나 운행중인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가지대에서 사고직후 가해 운전자가 부상자를 사고 승용차에 태워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